

의안번호	제 51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14. 10. 23. (제 19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기획경제국장 문경수
제출연월일	2014. 10. 2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채납징수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한 개인별 지급한도 상향 조정 및 채납징수 전담반 임기제 공무원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한도를 명확히 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4조제1항제2호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한도 “50만원”을 “100만원”으로 변경하여 채납징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함.

나.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을 위해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한도를 명확히 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4.9.12. ~ 2014.10.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내용 :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발전기본법」,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해당 조례 제5조 위원회 구성을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  
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제시
- 검토결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강남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 시 추후 반영 예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5백만원의 범위 에서”를 “500만원의 범위에서”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p> <p>1. (생 략)</p> <p>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u>50만원</u></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u>5백만원의 범위</u>에서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p> <p>&lt;<u>후단신설</u>&gt;</p>	<p>제4조(지급한도)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100만원</u></p> <p>② ----- ----- ----- ----- <u>500만원의 범위에서</u> ----- -----.</p> <p><u>다만,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p>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구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한도 규정에 따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되는 바, 이에 대한 지급 비용 발생

연도별 포상금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합 계	198,125	212,533	222,776	235,768
구 세	96,800	99,949	99,302	99,362
세외수입	101,325	112,584	123,474	136,406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

**4. 작성자**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이경희(02-3423-5637)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경제국 세무관리과	
연 락 처	(02) 3423 - 5637